

제 1 조 (약관의 적용)

예탁증권담보용자(이하 “용자“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 “용자 고객“이라 한다)과 SK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용자거래를 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 2 조 (관계법령의 준수)

용자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 3 조 (담보용자의 구분)

본 약관에 따른 용자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담보용자 : 회사가 용자고객에게 용자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용자고객은 용자 기간의 종료일 이전까지 상환하는 용자거래
2. 매도담보용자 : 회사가 용자고객으로부터 수탁하여 체결된 증권 매도주문에 대해 당해 매도금액의 일정비율을 용자하고 당해 증권의 매도 결제금액으로 상환되는 용자거래

제 4 조 (담보예탁증권)

- ① 회사가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상장채권, 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 수익증권으로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별지에서 정한 증권을 말한다.

제 5 조 (용자한도 및 용자기간)

- ① 용자고객은 별지에서 정한 1인당 용자금액 최고 한도내에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 ② 용자기간은 일반담보용자의 경우 용자를 받은 날로부터 별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매도담보용자의 경우 용자금 지급일로부터 당해 증권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약정의 체결 및 해지)

- ① 용자고객은 용자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용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과 별도로 홈트레이딩서비스 이용약정이 체결된 용자고객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서비스시스템(이하 “온라인서비스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직접 용자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용자고객은 용자약정을 해지하기 전까지 제5조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지속적으로 용자거래를 할 수 있으며, 용자약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자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용자고객은 용자약정의 해지를 별도의 신청서에 의해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또는 전화에 의하여 용자고객의 해지 의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용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용자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제 7 조 (용자금액)

- ① 회사는 용자를 할 때에 별지에서 정한 담보가액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용자를 한다. 다만, 매도담보용자를 할 때는 매도금액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용자를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매도담보용자를 함에 있어 용자실행일 전일에 매도를 통해 발생한 용자가 능금액 중 일부가 용자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용자실행시 전일의 잔여용자가능금액을 우선적으로 용자에 사용하며, 용자고객이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전일의 용자가능금액을 사용한 용자금액에 대한 용자이자 산출기준일은 용자실행일 전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 용자실행일로 한다.

제 8 조 (용자방법)

용자는 회사의 영업점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서비스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용자 실행시 용자금은 해당계좌에 입금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 9 조 (용자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용자고객은 별지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용자이자를 별지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용자이자를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용자금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 조 (담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용자를 할 때에 용자금에 대하여 별지에서 정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는다.
- ② 용자금에 대한 담보는 증권에 설정하는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매도담보용자에 있어서는 당해 매도증권을 질권의 목적물로 한다.
- ③ 회사가 당해 용자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3자 (한국증권금융 등)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예탁증권담보용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예탁증권을 제3자 (한국증권금융 등)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용자고객에게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타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④ 질권설정에 대한 약정은 용자약정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⑤ 질권설정의 시기는 용자를 신청하여 용자승인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추가담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일반담보유자를 함에 있어 용자고객은 담보가액의 총액이 별지에서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지에서 정한 추가담보제공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요구시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자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용자고객은 동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 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통하여 용자약정을 체결한 용자고객은 담보부족시 최종납부요구일의 부족액을 온라인서비스시스템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 ④ 제1항의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 계좌 내에 두가지 이상의 용자가 있거나 신용거래계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 12 조 (용자의 상환)

- ① 일반담보유자의 용자금 및 용자이자 상환기일에 당해 계좌의 예수금으로 자동상환되며, 용자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 ② 매도담보유자의 용자금 및 용자이자 상환에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처리에 의한 매도결제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상환된다.
- ③ 매도담보유자를 함에 있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금 중 일부가 용자실행일 전일의 잔여용자가능금액인 경우 해당부분의 상환일은 전일에 매도체결된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로 한다.

제 13 조 (임의상환정리)

- ① 회사는 상환기일 이전에 용자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 내에 용자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자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매도담보유자에 있어서는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자가 자동상환되므로 회사가 상환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용자고객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용자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자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추가담보의 납부요구시 제11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용자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의상환방법)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회사는 제14조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가 가능한 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⑤ 제 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용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 15 조 (담보권의 효력범위)

담보권은 제13조에서 정한 담보권의 실행으로도 용자금이 완전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용자고객이 용자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유가증권의 이자, 배당금, 배

당신주, 무상신주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 16 조 (기한의 이익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위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날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대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

제 17 조 (금지사항)

회사는 용자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용자금이 있는 용자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 용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당해 용자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및 신규용자

제 18 조 (용자의 제한 및 중단)

-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정보 또는 고객의 신용도(불공정거래자, 무담보 미수채권 발생자 등)에 따라 용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 ② 회사는 관련법령, 금융 감독당국의 조치, 담보대출 총 한도 초과 등 그 밖의 회사가 담보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위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경우 담보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 또는 대출신청일에서 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용자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용자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용자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용자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용자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용자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용자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기재내용 변동시의 신고)

용자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 용자약정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2 조 (관계법규의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3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자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아래 당사자간에 _____년 월 일 체결한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다음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① 제 4 조(담보예탁증권)

융자구분	담보예탁증권
주식담보융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상장채권
수익증권/채권/파생결합사채 담보융자	담보융자가능종목*
CMA MMF 담보융자	약정된 상품 계좌 내의 수익증권

* 담보융자가능종목

- 수익증권 : 중도환매가 가능한 수익증권
(사모형, 폐쇄형, 만기매칭형, 원금비보장형 ELF 및 회사가 지정한 종목은 제외)
- 채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회사가 지정한 종목은 제외)
- 파생결합증권 : 원금보장형

- ② 제 5 조제 1 항 (융자한도) : 개인 및 법인고객은 최대(개인 5 억원, 법인 10 억원)내에서 대출약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자산,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대출약정 최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 5 조제 2 항 (융자기간) : 대출기간은 고객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로 하며,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연장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 개월 단위로 최대 4 회(총 12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 7 조제 1 항(융자금액)

구분	담보가액 융자비율
주식	대용평가금액 합계의 70% (단, 회사전체로 종목당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수량은 해당회사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수익증권	당일기준가의 70% 이하 (단, 주식형, 파생형 50%이하,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60%이하, 채권형 65%이하)
채권	국채,지방채, 특수채의 경우 대용평가금액의 70%이하, 회사채의 경우 대용평가금액의 60%이하
파생결합사채	전일종가로 평가된 채권평가사 평가금액의 60%이하
매도담보융자	매도금액의 98%

※ 담보대출 및 임의상환 단위 : 수익증권 1 좌, 파생결합사채 100 주, 채권 1 만원

- ⑤ 제 9 조 (융자이자) : 융자이자율은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고객등급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며, 고객등급별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단, 매도담보융자의 경우 8% 단일 이자율을 적용한다.

SUPEX 10	SUPEX	일반
----------	-------	----

7.0%(년)	7.5%(년)	8.0%(년)
---------	---------	---------

※ 우수고객 기준은 당사 “홈페이지 > 우수고객서비스” 참조

※ 만기 연장 고객의 경우 대출고객등급 제적용

※ 이자계산시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 ⑥ 제 9 조 (용자이자 납입일) : 용자이자의 정기 납입일은 매월 (첫영업일)로 한다. 단, 상환시에는 상환일을 대출이자 납입일로 한다.

* 이자내역은 “HTS> 온라인지점> 신용/대주/대출> 신용/대출 이자조회 및 이자 징수내역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 ⑦ 제 9 조 (연체이자)

가. 만기 미상환대출금 연체이자율 : 연체발생시점의 약정이자율+3%

나. 정기 대출이자 미납분에 대한 연체이자율 : 연체발생시점의 약정이자율+3%

※ 만기 연장 고객의 경우 대출고객등급 제적용

※ 자세한 내용은 “ 홈페이지>대출/신용/대차>신용공여안내> SK 대출서비스 Q&A” 참조

- ⑧ 제 10 조제 1 항(담보의 제공 및 제 11 조제 1 항 (추가담보의 제공 및 관리)

가. 담보유지비율 : 140%

나. 추가담보제공기간(단, 증권시장 휴장일 제외)

담보비율	주식	수익증권	채권	파생결합사채
130%이상~140%미만	추가담보제공요구일+1일(D+2일 반대매매)			
130%미만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당일 (D+1일 반대매매)	추가담보제공요구일+1일 (D+2일 반대매매)		

※적용기준은 국내 매 영업일 국내증권시장 종료 기준으로 산정된 담보비율로 함

- ⑨ 제 14 조제 3 항(임의상환방법)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⑩ 제 14 조제 4 항, 제 5 항(임의상환 처분 수량 및 순서)

구분	반대매매수량 산정기준
미상환용자금 발생계좌	1) 대출용자 만기 반대매매 시 남아있는 예수금으로 자동현금상환(비율상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용자 만기 자동현금상환 선정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통신용→자기신용→일반담보대출 ② 신용공여일 우선 ③ 신용공여일이 같으면 종목번호순 2) 자동현금상환 후 남아있는 용자원리금(제비용 포함) 상환에 필요한 수량만큼 전액상환방식으로 반대매도 수량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반대매도 수량 산출식 (매도제비용은 제외) $\left(\text{대출용자금액} + \text{대출용자이자} \right) / \text{하한가}^*$ *주식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수익증권 : 기준가격 x 95% 파생결합사채 : 평가가격 x 90% 채권 : 민평가격+N x 20bp (N:연체일, 민평+300bp 내에서 체결 또는 현금상환 될때까지)
담보부족계좌	1) 담보부족 반대매매 시 남아있는 예수금으로 자동현금상환(비율상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부족 반대매도 자동현금상환 선정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담보 부족종목→원담보 충족종목

	<p>② 유통신용→자기신용→일반담보대출</p> <p>③ 신용공여일 우선</p> <p>④ 신용공여일이 같으면 종목번호순</p> <p>2) 자동현금상환 후 담보유지비율 충족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 전액상환방식으로 반대매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매매 수량 산출식(수수료, 이자 등 제비용 미반영) ☞ $\text{담보부족금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하락가}^*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 <p>*주식 : 전일종가 x 75%(25%하락가) 수익증권 : 기준가격 x 95% 파생결합사채 : 평가가격 x 90% 채권 : 민평가격+N x 20bp (N:연체일, 민평+300bp내에서 체결 또는 현금상환 될때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부족 반대매매 선정순서 ① 원담보 부족종목→원담보 충족종목 ☞ 부족종목 종목담보비율140% 충족수량 순차적으로 선정후에도 담보유지비율 140% 미달하면 부족종목 첫종목부터 전량 반대매도 ② 유통신용→자기신용→유통대주→일반담보대출 ③ 신용공여일 우선 ④ 신용공여일이 같으면 종목번호순 ⑤ 이종상품 내 주식→수익증권→파생결합사채→채권 ⑥ 동종상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식→적립식→거치식 - 기준가 적용일이 짧은 종목→저위험→종목코드순 ·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지방채→공사채→회사채 - 신용등급이 높은 종목→만기가 짧은 종목 · 파생결합사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존만기가 긴 종목 → 평가가격이 낮은 종목
--	--

⑪ 제 14 조제 6 항(임의처분 순서 변경 시간) : 임의상환 처분일 당일 08:40 까지